

일본 근대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right의 번역어 ‘權利’를 중심으로

최 경 옥
(한양대)

1. 들어가는 말

‘메이지(明治) 유신’이라는 일본 근대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면서 일본은 봉건적 막번(幕藩)체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적 통일 국가와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기존의 봉건주의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서구 자본주의 문명을 수용하게 되며,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국가 만들기에 매진하게 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메이지 유신을 통한 일본의 근대화의 변화의 단면을, 서양어의 수용과 정착이라는 측면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메이지라는 새로운 시대, 일본의 신문명론자들은 국가 발전의 동력을 이루는 주요 분야에서 기존의 봉건적 논리와는 전혀 다른, 신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향이 논의되고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시대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학술 연구 분야에서는 ‘진리(眞理)’는 어떻게 추구해 가야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을 논의하는 방편으로 ‘논리학(論理學)’의 가치가 고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문명론자들은 서구자본주의 체제의 정수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자유(自由)’에 대한 논의가 빈번해 져야 하며, 더 나아가 ‘종교(宗教)의 자유(自由)’와 같은 세분화된 분야에서의 ‘자유’의 문제까지도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메이지기 일본에서는 신문명론자들을 중심으로 서구자본주의의 수용을 위한 신문명 용어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본의 신문명론자들은 신시대적 서구문명을 일본에 소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번역어를 만들어내게 되며, 번역의 도구로는 기존부터 익숙하게 사용하여 오던 한자(漢字)를 이용하게 된다. 즉, 근대번역한자어가 탄생되게 되는 것이다. 신문명론자들은 이들 번역한자어를 창조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일본 사회에 유통시키고, 정착시켜 일본인의 서구 문명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공헌하고자 한다.(鈴木修次, p.2) 뿐만 아니라, 이들 번역한자어는 漢字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이나 중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결과적으로 동양 사회에서 서구문명을 수용하는 근본 동력이 됨과 동시에, 동양 사회 내에서 새로운 우승열패의 질서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번역한자어의 실태를, 그것도 구체적인 번역한자어에 입각하여 그 성립과 수용의 관계를 명료화하는 것은 한자문화권에 있어서의 근대화의 문제를 푸는 기초작업으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메이지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한자어 가운데, 자본주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right’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일본에서 ‘권리(權利)’로 번역되었으며, 또 그것이 개화기 한국(조선)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번역어 ‘권리(權利)’의 성립

본론에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논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고전에서 사용된 ‘권리(權利)’의 의미를 추적하여 번역어 이전의 ‘권리’의 의미에 대하여 추적해 보고, 그 다음으로는, 메이지기 일본에서 번역어 ‘권리(權利)’가

만들어지고 전개되는 과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화기 한국에서 번역어 '권리(權利)'가 수용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말하면, '권리(權利)'라는 단어가 근대 이전의 중국측 자료(한적)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는가를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일본 메이지기에 번역어 '권리(權利)'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메이지기 용례를 통하여 추적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화기 한국에 '권리(權利)'가 수용되는 과정은 어떠한 것인지를 개화기 용례를 통하여 추적할 것이다.

2-1. 중국 고전에서의 '권리(權利)'

'권리(權利)'는 메이지기 이전부터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단어로, 많은 중국 고전에서 그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 BC 3세기 중국의 제가백가 사상가중 한 사람인 순자의 사상을 모아놓은 『荀子』¹⁾권학편에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사용하고 있다.

目好之五色, 耳好之五聲, 口好之五味, 心利之有天下, 是故權利不能傾也. (『荀子』勸學篇)

: 눈은 오색을 좋아하고, 귀는 오성을 좋아하고, 입은 오미를 좋아하고, 마음은 천하를 갖는 것을 좋아하고 이러한 이유로 권리는 뒤집을 수 없다.

인간에게는 항상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세를 구하고, 이익을 구하는 마음” 즉 “권리”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권리(權利)'의 의미는 “권세를 구하고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권리'의 의미는 중국 고전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의미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본 『荀子』이외에, 『史記』『漢書』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以權利合者, 權利盡而交疏 (『史記』²⁾, 鄭世家)

: 권리를 가지고 남을 대하는 자는, 권리가 다 하고 나서야 서로 교제소통

- 1) 중국 주나라의 유학자 순자의 사상을 집록한 책으로 현본 20권 33권이다. 내용적으로 권학, 예론, 성악론이 중심을 이룬다.
- 2) BC 90년경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 사마천이 저술한 역사서.

할 것이다.

貴仁義, 賤權利, 上篤厚, 下佞巧 (『漢書』³⁾, 嚴安伝)

: 인의를 귀하게 여기고, 권리를 낮게 여기고, 독실함을 위에 두고, 교활함을 아래에 둔다.

또한, 중국 고전에서는 ‘권(權)’이라는 한자도 현재와는 다른 의미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다음의 『孟子』의 용례에 잘 나타나 있다.

嫂溺援之以手者, 權也. (『孟子』⁴離婁上)

: 형수가 물에 빠져 이를 구하는데, 손을 잡아 구하는 것은 권이다.

즉, 『孟子』에서 사용된 ‘權’은 “보통 때는 사용하지 않는 임시의 방법”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남녀유별로 손을 잡거나 하는 신체적 접촉은 금지되어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규율도 파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목숨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는 형수의 손을 잡아 목숨을 구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법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大漢和辭典』에는 ‘권리(權利)’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大漢和辭典』
1. 權力と利益 (『荀子』)
 2. 普通尋常ではない。
 3. 社會生活上の利益を享受する法律上の力。

즉, 위의 『순자』 등의 중국 고전에서 용례를 본 바와 같이, 중국 고전에서 ‘권리(權利)’는 ‘권력(權力)’과 ‘이익(利益)’이라는 의미를 조합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권리’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하여 중국 한적에서 사용되던 ‘권리(權利)’ 또는 ‘권(權)’의 의미

3) 후한의 반고가 80년경 완성한 전한의 역사서.

4) 중국 전국시대 유교사상가 맹자의 사상을 모아놓은 철학서로, 맹자7편은 후대의 제자들에게 의해 편찬되었다.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권리(權利)’는 권세를 구하고 이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권(權)’은 보통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임시변통의 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근대적 의미와는 완전히 달랐다.

2-2. 메이지기 일본의 ‘권리(權利)’

186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권리(權利)’의 원어인 “right”가 “청렴한 것”“법령”“율령”으로 번역되고 있었다.⁵⁾ 또한, 1860년대 대표적인 대역사전인 『和英語林集成』에는 표제어로서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권(權)’ 과 ‘리(利)’가 각각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1860년대 전반까지 일본에서는 ‘권리(權利)’라는 번역어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KEN 権 n. Power, authority, influence.

RI 利 n. Profit (『和英語林集成』1판, 1867, 햄번)

그렇다면, 1860년대 일본에서 ‘權’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는 위의 『和英語林集成』(1판, 18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power 즉,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는 약 20년 후에 발행된 『和英語林集成』(제3판, 1886)에서도 거의 변함이 없다. 『和英語林集成』 3판이 나올 무렵인 1880년대 중반, 결과적으로 말하면, ‘권리’가 일본에서 번역어로서 정착된 시기에도, ‘권(權)’은 종래부터 가지고 있던 “힘”의 의미로도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메이로쿠샤(明六社)⁶⁾ 회원이었던 津田眞道 (쓰다마미치)가 네덜란드에서 피셀링(Simon Vissering) 교수의 강의를 적은 강의 노트에는 “right”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어 “recht”를 ‘본분(本分)’으로 해석한 것이 남아 있다. 이 강의 노트에

5) 『英和對譯袖珍辭典』(1862), right : 廉直ナル事、捌キ方、右手 (:청렴하고 곧은 것, 처리방법, 오른쪽)

『佛語明要』(1864). droit : 法令, 律令, 政治科(:법령, 율령, 정치과)

6) 1873년 森有禮(모리아리노리)에 의해 발기된 일본최초의 학술단체. 정치, 경제, 종교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계몽사상을 일본에 고취시킨 신문명론자들의 단체이다.

서 “(natural) recht”는 현재의 “(자연)법”을 말하는 것으로, 네덜란드어 “recht”에는 영어의 “right”의 의미 이외에도 “법(률)”이라는 의미가 함께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recht”를 ‘본분’으로 번역한 것은 recht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津田眞道の 오역으로 판단된다.(柳父章 152)

天然の本分 natuur recht (津田眞道の 강의 메모록)

津田眞道와 함께 네덜란드에서 피셀링 교수의 지도를 받은 西周(니시아마네)는 일본 귀국후, 피셀링 교수의 강의 기록을 번역하여 『萬國公法』⁷⁾이라는 국제법 관련 서적을 간행하게 된다.

萬國公法ハ、法學ノ一部ニシテ、万国互ニ相對シ秉ル事ヲ取ルノ權ト務メザル事ヲ得ザルノ義トヲ論ずるモノナリ。(『萬國公法』)

: 만국공법은 법학의 일부이고, 만국이 서로 상대하여 잡을 권(權)과 역할을 다해야만 하는 의(義)를 논하는 것이다.

: *Volkenrecht* is dat gedeelte der rechtswetenschap waarin de wederzijdsche rechten en verpligtingen verpligtingen de volken behandeld worden. (강의기록)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西周는 津田眞道와 달리, “recht”(영어의 right)를 ‘권(權)’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1860년대의 일본에서의 ‘권(權)’의 의미는 『和英語林集成』(1867)에서 본 바와 같이 ‘힘’이라는 의미가 통용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recht”의 번역어로, 힘, 권력의 의미로 사용되던 ‘권(權)’을 사용했다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매우 아이러니하다. 西周가 ‘권(權)’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西周가 이미 중국에서 간행되어 읽혀지고 있던 중국측 번역서 漢譯 『萬國公法』⁸⁾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漢譯 『萬國公法』에서

7) 1862-1865년 西周와 津田眞道가 유학지인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에서 피셀링교수의 강의를 필기한 강의록을, 1868년 西周가 귀국후 국제법 부분을 정리하여 『万国公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다.

사용하고 있던 “right”의 번역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 시기 즉, 1860년대 중국에서는 이미 “right”의 번역어로 ‘권(權)’을 사용하고 있었고, 동시에 종래부터 ‘권(權)’이 가지고 있던 “힘” “권력”이라는 의미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1860년대 중국어 대역사전인 선교사 로브샤이드(W. Lobshied)의 『英華字典』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 실제 동사전의 ‘right’ 부분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1860년대 중국에서의 ‘right’의 번역은 ‘권(權)’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the right of citizens, 民之權
 legal power, 權 (W. Lobshied, 『英華字典』, 1866-69)

이와 같이 西周는 “right”의 번역어를 만들어냄에 있어, 이미 중국에서 사용하던 ‘권(權)’이라는 번역어를 차용하였고, 西周가 “right”의 번역어로 ‘권(權)’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번역가들도 점차 “right”의 번역어로 ‘권(權)’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권리(權利)’라는 번역어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¹⁰⁾ 현재까지 발견된 번역어 ‘권리(權利)’의 사용례 가운데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은 西周와 함께 明六社의 회원이면서 신문명론자였던 加藤弘之(가토히로유키)가 저술한 『立憲政體略』에서이다.

-
- 8) 휘턴(Henry Wheaton)의 『국제법의 요소들』(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1836년 초판)을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A.P.Martin)이 중국에서 덩웨이량(鄭韋良)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여 한역 『万国公法』을 출판한다. 이후 일본에도 휘턴의 『万国公法』이 소개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국제법은 2개의 기원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 휘턴의 『万国公法』(덩웨이량역)이고, 두 번째가 피셀링의 강의를 정리한 『万国公法』(1868, 西周역)이다.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114)
- 9) 명대말기부터 중국에는 서양 선교사에 의해 서양학문이 전래하게 된다. 17세기 초반 서양선교사들은 포교활동에 대역언어사전이 필요함을 느끼고 영어-중국어 대역사전을 편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판된 대표적 대역사전에는 로버트모리슨(Robert Morrison)의 『英華字典』, 매드허스트(W.H.Medhurst)의 『英華字典』, 로브샤이드(W. Lobshied)의 『英華字典』 등이 있다.
- 10) 다만, 현재까지의 아직 누구에 의하여 가장 먼저 ‘권리(權利)’라는 번역어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하여서는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權利ニ二類アリ。一ヲ私權ト稱シ、ニヲ公權ト稱ス。(『立憲政體略』, 1868, 加藤弘之)

: 권리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권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공권이라고 한다.

己レニ權利アレバ、他人ニモ亦必ズ同様に權利ガアル。(『眞政大意』, 1870, 加藤弘之)

: 나에게 권리가 있다면, 타인에게도 또한 반드시 같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번역어 ‘권리(權利)’가 성립되고, 사용되던 시기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번역어가 사용되거나 만들어지고 있었다. 예를들어 福澤諭吉(후쿠자와유키치)가 그러하다. 그는 『西洋事情』(2편, 1870)에서 “right”의 번역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여기에서 그는 중국에서는 “right”의 번역어로 ‘통의(通義)’ ‘달의(達意)’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양쪽 모두 영어의 “right”의 원의(原義)를 충분히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福澤諭吉 본인은 『西洋事情』(2편, 1870)에서 “right”의 번역어로 중국측 번역어인 ‘통의(通義)’를 사용하고 있다.

人間通義。英國人民ノ自由。一身ヲ安穩ニ保スルノ通義。

(『西洋事情』 2편, 1870, 福澤諭吉)

: 인간의 통의. 영국인민의 자유. 인신을 편안하게 유지할 통의.

당시의 상황에서, 福澤諭吉가 “right”의 번역어로 ‘권리(權利)’가 사용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福澤諭吉는 중국 한적에서부터 사용되어 오던 “권세와 이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권리’로는 “right”의 원의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없는 것은, ‘통의’도 ‘권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중국측에서 사용하고 있던 ‘통의(通義)’가 “right”의 원의에 좀더 가깝다고 본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본고는 메이지기 일본에서의 번역어 ‘권리(權利)’의 성립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1860년대 중반까지 ‘right’는 일본에서 ‘청렴한 것’ ‘법령’ ‘분분’ 등으로 번역되고 있었다. 이는 “right”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초창기 신문명론자들의 오역이었다. 1860년대 후반에는 西周가 ‘right’의 의미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權’을 차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권리(權利)’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번역어 ‘권리(權利)’가 성립된 후에도, ‘통의(通義)’ ‘달의(達意)’ 등 ‘권리(權利)’ 이외의 다양한 ‘right’의 번역어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2-3. 개화기 한국의 ‘권리(權利)’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번역어 ‘권리(權利)’가 수용되기 이전, ‘권(權)’은 한국에서도 “권세” “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權)’을 사용하고 있다.

夫權奸之稱 (인조실록 46, 1651. 12)
: 무릇 권세 있는 간신의 칭호는.

한국에서 “right”의 번역어로 ‘권리(權利)’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880년대 중반무렵이다. 한국측 자료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용례 중 가장 앞선 시기의 ‘권리’는 1885년 고종순종실록에서의 기록이다.

護衛兵派遣, 權利保留照會 (고종22(1885.6))
: 일본공사가 호위병을 파견하는 권리를 보류한다고 조회하다.

실록이라는 극히 일부의 지도층 인사만이 사용하던 자료에서 용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용례를 통해 ‘권리’가 1880년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1880년대 당시의 대역사전에도 “right”의 번역어로 ‘권리’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right의 또다른 의미인 ‘옳은것, 바른것’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단정하기 어렵다.

1890 『영한즈뉘』, 언더우드
right, n. 옳은 것. 바른 것. 옳흔편.

1891 『ENGLISH-COREAN DICTIONARY』, 제임스 스코트

right (correct), 옳다.

right (justice), 의리.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1880년대 중반 한국에서, ‘권리’는 번역어로서 수용은 되었으나, 아직 일반인에게까지 통용될 정도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화기 한국에서 ‘권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된 용례가 발견되는 것은 1890년대 중반으로, 다음과 같은 교과서, 계몽서, 신문 등에서이다.

1895 『국민소학독본』 : 칭호는 각각 다르나 상대호는 권리는 차등이 없
는니라

1895 『서유견문』 :
其獨立自守호는基礎로其主權의權利를自行호則各邦의權利는互係
호職分의

1896 「독립신문」 : 남군의 권리를 빼앗는 거시오 빅성을 권리를 주는
거시니 (1896. 6. 4)

모두 1890년대 편찬된 것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인데, 1890년대 한국측 자료들은 일본과의 대외관계가 점차 밀접해지는 과정에서 간행된 것들이 많다. 1895년 조선 정부에 의해 갑오개혁이 단행된 이후, 학부편제가 새롭게 개편되게 되는데, 이에 맞추어 소학교령이 반포되고, 관립소학교가 설립되게 된다. 또한 이곳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학부편집국에서 편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과서 간행의 고문으로 일본인 교문관을 초빙하여 편찬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890년대 이후 간행된 교과서들은 일본의 영향이 지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메이지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한자어가 다량으로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유견문』은 유길준이 구미제국을 돌아보면서 체험한 내용¹¹⁾을 기록한 계몽서이다. 그러나, 일부는 福澤諭吉의 『西洋事情』을 한국어

11) 유길준은 1881년 신사유람단에 참가하고 같은 해 慶應義塾에 입학, 1882년 12월 귀국한다. 1883년에는 보빙사(報聘使) 수행원으로 참가, 미국에 파견되며, 유럽을 거쳐 귀국한다.

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유길준도 『서유견문』서문에서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¹²⁾ 이와 같이 1890년대 한국에서 간행된 저작물이나 편찬물에는 일본의 영향이 매우 지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메이지기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던 많은 근대번역한자가 일본으로부터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번역어 ‘권리(權利)’도 일본의 영향이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1890년대 중반에 출판된 간행물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필시 일본으로부터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권리’가 한국에서 사전에 등재되어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로부터 불과 15년 후인 1910년대 초반무렵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당시 한국에 근대번역어가 얼마나 급격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1911 『韓英字典』, 개일

권리, s. 權利(權勢) (리홀) Natural rights; privileges; prerogative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권리’라는 번역어의 수용 시기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권리’는 1880년대 중반, 한국에 수용은 되었으나, 일부 계층에서만 사용되었다. 그후 1890년대 후반,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밀접해지면서, 일본과 관계가 깊은 교과서, 계몽서 등의 편찬물에 사용되었고, 일반인에게 수용되기 시작한다. 이후 1910년경에는 대역사전에 등재되는 등, 한국어에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3. 마치는 말

이상 본고에서는 근대 서양 사상의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right’

12) 서유견문 71개 항목 중 『西洋事情』에서 번역한 부분은 26개 항목에 달한다. (任展慧(1994), 『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學と歴史』, 日本法政大學出版部). 또한 유길준 자신도 『西遊見聞』의 서문에서 “本書의 輯述함이 惑自己의 見聞을 隨하여 論議를 立한 者도 有하고 他人의 書を 傍考하여 譯出한 者도 有하니”라고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시인하고 있다.

가 메이지기 일본에서 ‘권리(權利)’로 번역되는 과정과, 그것이 다시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을 자료의 용례를 중심으로 추적, 고찰하여 보았다.

1860년대 전반기 일본에서는 “right”의 번역어로 “청렴한 것” “법령” “율령” “본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right”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초창기 신문명론자들의 오역이었다. right의 번역어 ‘권리’는 1860년대 후반 西周가 당시 중국에서 사용되던 ‘권(權)’을 차용하여, 자신의 번역서 『만국공법』에 사용하면 서부터이며, 1860년대 후반 加藤弘之를 비롯한 明六社 회원들이 ‘권리’를 right의 번역어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번역어 ‘권리’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860년대 후반 일본에서 성립한 ‘권리’가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이 보다 약 20 여 년 후인 1880년대 중반이다. 그러나 1880년대 중반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권리’가 한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 중반 무렵, 일본의 영향을 받은 저작물에 사용되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약 15년 후에는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는 등 시민권을 가진 한국어로서 뿌리내리게 된다.

메이지기의 번역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성된 서양사회의 문화, 사상을 일본의 상황에 적절하게 번역하여 일본적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이지기 일본의 경우, 하나의 서양 개념어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정착되기까지 긴 것은 50여년, 짧은 것은 30여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등장한 번역어에 대한 사회적 합일을 이루며 정착하여 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메이지기 번역가들이 생각하는 번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국의 개념과 사상을 수용하는 행위라기보다, 일본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근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문화적 실천이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국서 단행본>

- 國史編纂委員會. 1970, 『高宗純宗實錄 上中下』(1863-1907), 探究堂.
- 國史編纂委員會編. 1958, 『修信使記錄』(韓國史料叢書9), 國史編纂委員會.
- 민족문학사연구소. 2000, 『근대계몽기의 학술문예사상』, 소명출판.
- 朴英燮. 1992-1997, 『開化期國語彙資料集 1-5』, 도서출판박이정.
- 박지향. 2004, 『일그러진 근대』, 푸른역사.
- 沈在箕. 1990, 『國語彙論』, 集文堂.
- 俞吉濬. 1895, 『西遊見聞』, 『俞吉濬全書1권』 一潮閣.
- 李光麟. 1994, 『開化史研究』, 一潮閣.
- 이지은. 2006, 『왜곡된 한국 외로운 한국』, 책세상.
- 이한섭·최경옥 외. 2000, 『西遊見聞 語彙索引』, 박이정출판사.
- 이혜영·윤종혁 외. 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 임성모 역.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 최경옥. 2005, 『번역과 일본의 근대』, 살림출판사.
- _____. 2003, 『한국 개화기 외래한자어 연구』, 제이앤씨.
- 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77, 『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1-20, 亞細亞文化社, 1977.

<한국서 게재 논문류>

- 朴英燮. 1992, 「한자 어휘 비교 분석 연구」, 『강남어문』 7, 강남대국문과.
- 서재극. 1970, 「開化期 外來語와 新用語」, 『동서문화』 4, 계명대 동서문화연구소.
- 송민. 1999, 「신생한자어의 성립배경」, 『새국어생활』 9-2,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2000, 「개화기 국어에 나타나는 신문명어휘」, 『어문학논총』 19, 국민대.
- 심재기. 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 국립국어연구원.
- 윤강구. 1997, 「李人植の銀世界に出てくる漢語の分析」, 『일어교육』 14, 1997.
- 이한섭. 1987, 「西遊見聞에 받아들여진 일본의 한자어에 대하여」, 『일본학』 6,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 _____. 1991, 「Lobscheid의 英華字典이 附音插圖 英和字典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단송 이영구 박사 화갑 기념 논총』, 동간행위원회.
- 최경옥. 2000, 「개화기 번역한자어의 수용과 유입-『新訂尋常小學』을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2, 한국일본어학회.
- _____. 2002a, 「한국개화기에 있어 번역 한자어의 수용과 유입-『혈의 누』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51, 한국일본학회.
- _____. 2002b, 「한국에 있어서의 번역 한자어의 연구」, 『한양일본학』 10, 한양일본학회.
- _____. 2003a, 「한국개화기 근대 한어의 수용에 대하여-경제, 기차, 공리를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국제심포지움.
- _____. 2003b, 「개화기 외래 번역 한자어의 수용-은세계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55.
- _____. 2003c, 「개화기 외래 한자어의 수용 연구-치악산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56.
- _____. 2005, 「번역 한자어의 한국 수용에 대하여-건축, 사진, 신문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62.
- _____. 2006, 「메이지 번역어 성립-사회, 자유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 4-1.

<일본서 단행본>

- 古田東朔. 1978, 『小學讀本便覽 1-10』, 武藏野書院.
- 廣田榮太郎. 1969, 『近代譯語考』, 東京堂出版.
- 吉川泰雄. 1977, 『近代語誌』, 角川書店.
- 柳父章. 1993, 『翻譯語成立事情』, 岩波書店.
- 福澤諭吉. 1866, 『西洋事情』, 尙古堂.
- _____. 1876, 『世界國盡』, 尙古堂.
- 山內洋一郎. 1993, 『近代語の成立と展開』, 和泉書院.
- 森岡健二. 1969, 『近代語の成立-明治期語彙篇』, 明治書院.
- 杉本つとむ. 1981, 『近代日本語』, 紀伊國屋書店.
- 松井利彦. 1990, 『近代漢語辭書の成立と展開』, 笠間書院.

- 沈國威. 1994, 『近代日中語彙交流史』, 笠間書院.
- 鈴木修次. 1981, 『日本漢語と中國』, 中公新書.
- 左藤亨. 1986, 『幕末・明治初期語彙の研究』, 櫻楓社.
- _____. 1992, 『近代語の成立』, 櫻楓社.
- 佐藤喜代治. 1982, 『近代の語彙』, 明治書院.
- _____. 編. 1983, 『語誌 III』, 講座日本語の語彙 11, 明治書院.
- _____. 編. 1983, 『語誌 II』, 講座日本語の語彙 10, 明治書院.
- _____. 編. 1983, 『語誌 I』, 講座日本語の語彙 9, 明治書院.

[Abstract]

**A Study on Translation in Meiji Period of Japan and its Acceptance of
Korea:**

With Focused on the Term 'Right'

Choi, Kyung-ok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wo processes. One is how two basic meanings in the modern western ideology, "right" translate into Japanese. The other is how this translation has been accepted in Korea.

Before the 1860s in Japan, a term "right" was translated in various meanings such as a law, a statute, or integrity. It was the Nishiamane's *The document* in 1867, which translated a term "rench" as "right," that began to translate a term "right" as 權 (in chinese character) for the first time.

Nishiamane started translating '權' as right since he referred the book 'Element of International Law', which was translated into Chinese in 1864. However, as 權 was being used as the meaning of 'power' and 'right' in Japan in 1860s, it is irony why he borrowed the word '權' at that time. In late 1860s, Neo-civilizationist including Katohiroyuki began using '權利' as translation of 'right', and since then the word '權利' was commonly used in Japan.

While this translation became popular in Japan in the late 1860s, however, a term "right" was introduced into Korea in the late 1880s. And, its original conception was not used correctly until it became a term in common use in the late 1890s.

This context tells us that the modernization and issue of translation in

Japan should not be neglected as someone else'matter, but be taken as a key factor that is able to solve the relations of conception among nations after the modern age led mainly by Korea and Japan.

▶ Key Words: transfer word of right, translation of Meiji period, acceptance of the western conception, civilization

최경옥

한양대학교, 시간강사

roseok1130@yahoo.co.kr

전공: 일본어사, 메이지기 번역어

논문투고일: 2007년 4월 20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7년 6월 13일